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52601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씨엘

담당변호사 조상준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배근조

변론 종결 2022. 7. 6.

판결 선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9. 1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고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 2) B은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 1) 원고와 B은 2016. 2. 18.부터 2020. 2. 13.까지 사이에 B이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아래 각 보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D은행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아래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E
발급일	2016. 2. 18.
대출예정금액	28,400,000원
보증금액	25,560,000원 (17,0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7. 2. 17. (2021. 8. 13.로 변경됨)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
채권기관	D은행

보증번호	F
발급일	2019. 2. 1.
대출예정금액	64,000,000원
보증금액	51,200,000원
보증기한	2024. 1. 31.

보증번호	F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채권기관	D은행

보증번호	G
발급일	2020. 2. 13.
대출예정금액	135,000,000원
보증금액	108,000,000원
보증기한	2025. 2. 12.
대출과목	기업일반운전자금
채권기관	D은행

2) 한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채무 이행의무가 있고, 위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전구상권이 발생하도록 약정하였다.

3) B은 2020. 12. 15.부터 2020. 12.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인 대출금채무를 그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22. 신용보증사고 발생이 통지되었다. 원고는 2021. 3. 30. D은행에게 B의 대출금채무 142,766,857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다. 피고와 B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0128호로 B의 H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21. 1. 21. 제3채무자 H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B은 2020. 9. 16. 피고에게 B의 H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H에게 2020. 9. 17.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2) H은 2021. 9. 7.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원고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제 19419호).

라.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B의 자력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H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D은행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가 있어 당시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은 2020. 12. 15.부터 2020. 12. 22.까지 사이에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즉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를 그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대한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2) 나아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B이 운영하는 'C'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B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과 피고와의 관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및 그 대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수익자의 악의

-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2) 피고는 그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포함된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2)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H이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김재은

별지